

# 감정평가서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법보좌관 김은숙
건명	김동원 소유물건(2024타경2046)
감정서번호	달성224121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달성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

감정평가사

(인)

서정국

감정평가액	—금오억칠천팔십사만사천원정(₩570,844,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사법보좌관 김은숙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동원 (2024타경204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2.28	2024.12.28	2025.01.03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702 이	토지	2,702 하 여	- 백	570,844,000
	합계					₩570,84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 2. 대상 토지의 개요

(2024.01.01)

기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지가 (원/m <sup>2</sup> )
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940	1,871	전	전	계획 관리	소로 한면	부정형 평지	108,400
2	동소 940-7	831	임야	임야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3,800

### 3.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본건의 경우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4.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 12. 28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 5. 실지조사 일자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은 2024. 12. 18 일자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6. 기타사항

가. 기호1) 토지상의 접도구역 저축 부분은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나. 기호2) 토지상의 자생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적용 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본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의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적용함.

### 2.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는 산출과정을 거쳐 토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하였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는 생략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Ⅲ. 토지의 감정평가

###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2024. 01. 01 기준)

기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m <sup>2</sup> )
A	풍천면 도양리 225	883	답	답	계획 관리	세로 (불)	사다리 환경사	95,100

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되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 2. 시점수정

가. 지가변동률(안동시 계획관리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 01. 01 ~ 2024. 11. 30	1.334	11월까지 누계변동율
2024. 11. 01 ~ 2024. 11. 30	0.113	11월 변동율
2024. 01. 01 ~ 2024. 12. 28	1.441 (1.01441)	$(1+0.01334) \times (1+0.00113 \times 28/3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2024년 11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된 상태로서 2024년 11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나. 시점수정치 결정

시점수정을 위하여 생산자물가상승율도 고려 대상이나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물가변동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건 토지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상기 지가변동율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시점수정치	1.01441
-------	---------

## 3.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비교치: 1.000)

## 4. 개별요인 비교

본건 평가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음.

###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조 건	항 목				
	상업지대	주택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상태, 임도의 상태
접근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의 편의성	교통시설, 상가,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도심 및 시장 접근성, 물류시설과의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 접근성, 입목반출 용이성 등
환경조건 (자연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일조, 자연환경, 인근환경,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위험 및 혐오시설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자연환경	일조, 토양, 토질,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일조, 통풍, 토양, 토질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고저, 접면도로,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면적, 형상, 경사, 경작의 장애, 이용상황, 토양오염 등	규모, 형상, 고저, 표고, 이용상황, 임상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행정상의 규제정도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나. 격차율 산정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비 교 항 목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1	A	1.10	1.20	1.00	1.05	0.98	1.00	1.358
2	A	0.90	0.85	0.50	0.50	0.85	1.00	0.163

- 기호1) 토지는 표준지 대비 가로접근성, 토지경사도 등에서 우세하고 일부 접도구역 저축으로 열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함.
- 기호2) 토지는 표준지 대비 가로접근성, 지세, 이용상황 및 지목 등에서 상당히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5.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 선고고), 2002두 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의 감정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 나. 인근 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sup>2</sup> )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m <sup>2</sup> )	평가/거래 시점	비고
a	풍천면 도양리 230-2	답	2,353	계획관리	282,000	2023. 06. 08	평가사례
b	동소 231-1	답	555	계획관리	236,000	2023. 06. 08	평가사례
c	동소 222	전	1,794	계획관리	190,000	2021. 05. 06	평가사례
d	동소 산91-1	임야	34,757	계획관리	17,000	2021. 07. 27	평가사례
e	동소 819-2	답	1,336	계획관리	179,641	2022. 07. 22	거래사례
f	동소 산94-4	임야	3,612	계획관리	24,917	2022. 03. 10	거래사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1) 선례(사례)의 선정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사례 중 기호 a)를 선정하여 적용함.

2) 산출산식

$$\begin{aligned}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선례(사례) 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 \frac{\text{선례(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end{aligned}$$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구분	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가격 (원/㎡)	보정치산정 [선례(사례)기준 /공시지가기준]
1	사례 (기호 a)	282,000	1.01937	1.00	0.731	210,135	2.178
	비교표준지 (기호 A)	95,100	1.01441	-	-	96,470	

※ 시점수정치(안동시 계획관리지역, 2023. 06. 08 ~ 2024. 12. 28) : 1.01937

※ 지역요인비교 :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 개별요인비교 (사례 대비 표준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0.90	0.83	1.00	0.95	1.03	1.00	0.731

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 접근성, 토지 경사도 등에서 열세하고 행정적조건(표준지는 접도구역 저축)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열세함.

## 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본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에서 산정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및 평가선례, 거래사례 및 인근지역 부동산 경기상황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2.18)

## 6. 토지단가의 산정 및 결정

기호	표준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95,100	1.01441	1.00	1.358	2.18	285,595	290,000
2	A	95,100	1.01441	1.00	0.163	2.18	34,280	34,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 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며 상세한 물건별 평가금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940	전	계획관리지역	1,871	1,871	290,000	542,590,000	접도구역 저축감안
2	동소	940-7	임야	계획관리지역	831	831	34,000	28,254,000	수목포함
<b>합 계</b>								<b>₩570,844,000.-</b>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풍천면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 교통상황

본건(기호①) 및 본건 인근(기호②)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상황 무난한편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 북서하향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됨.  
기호2) 맹지임.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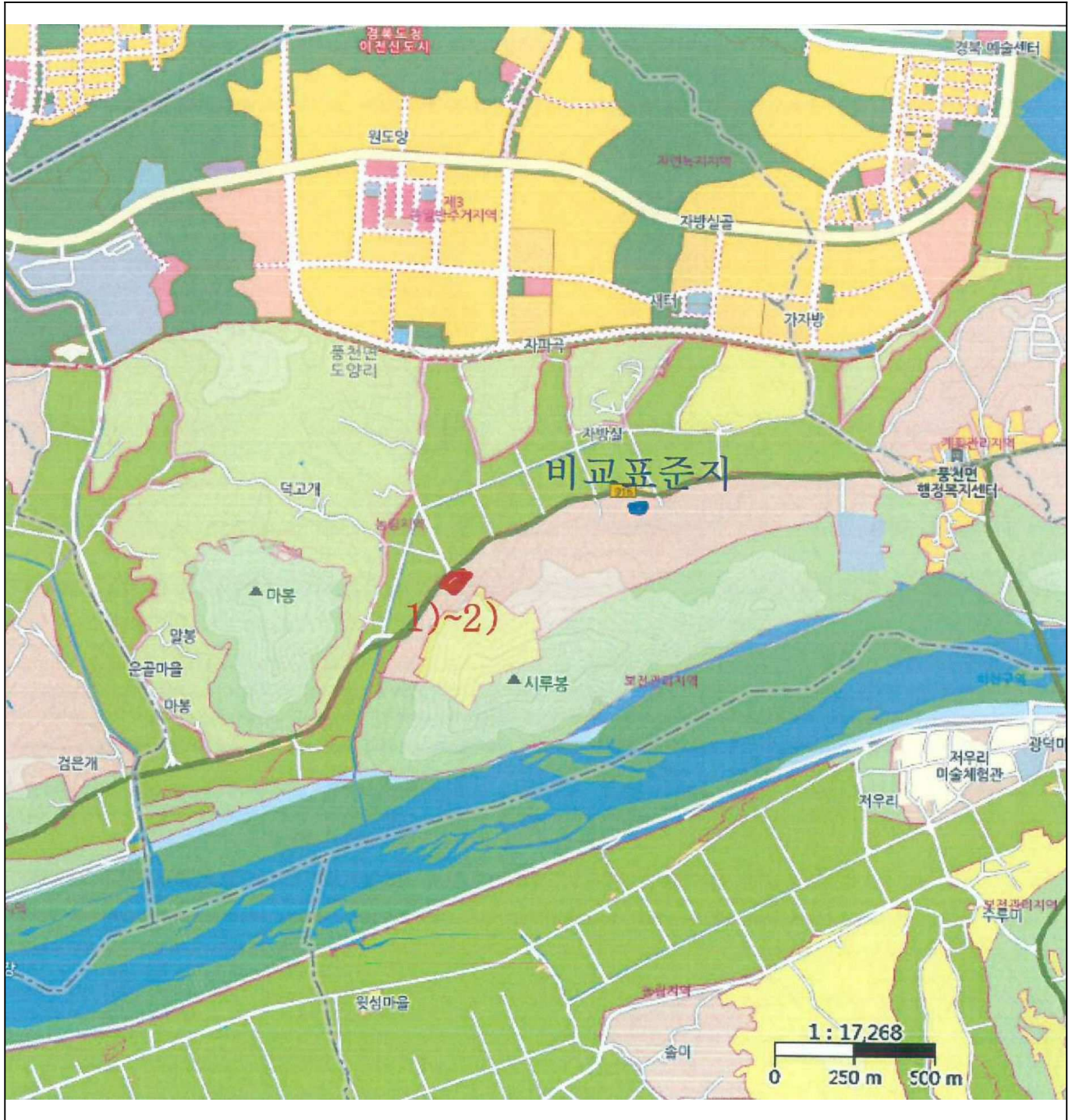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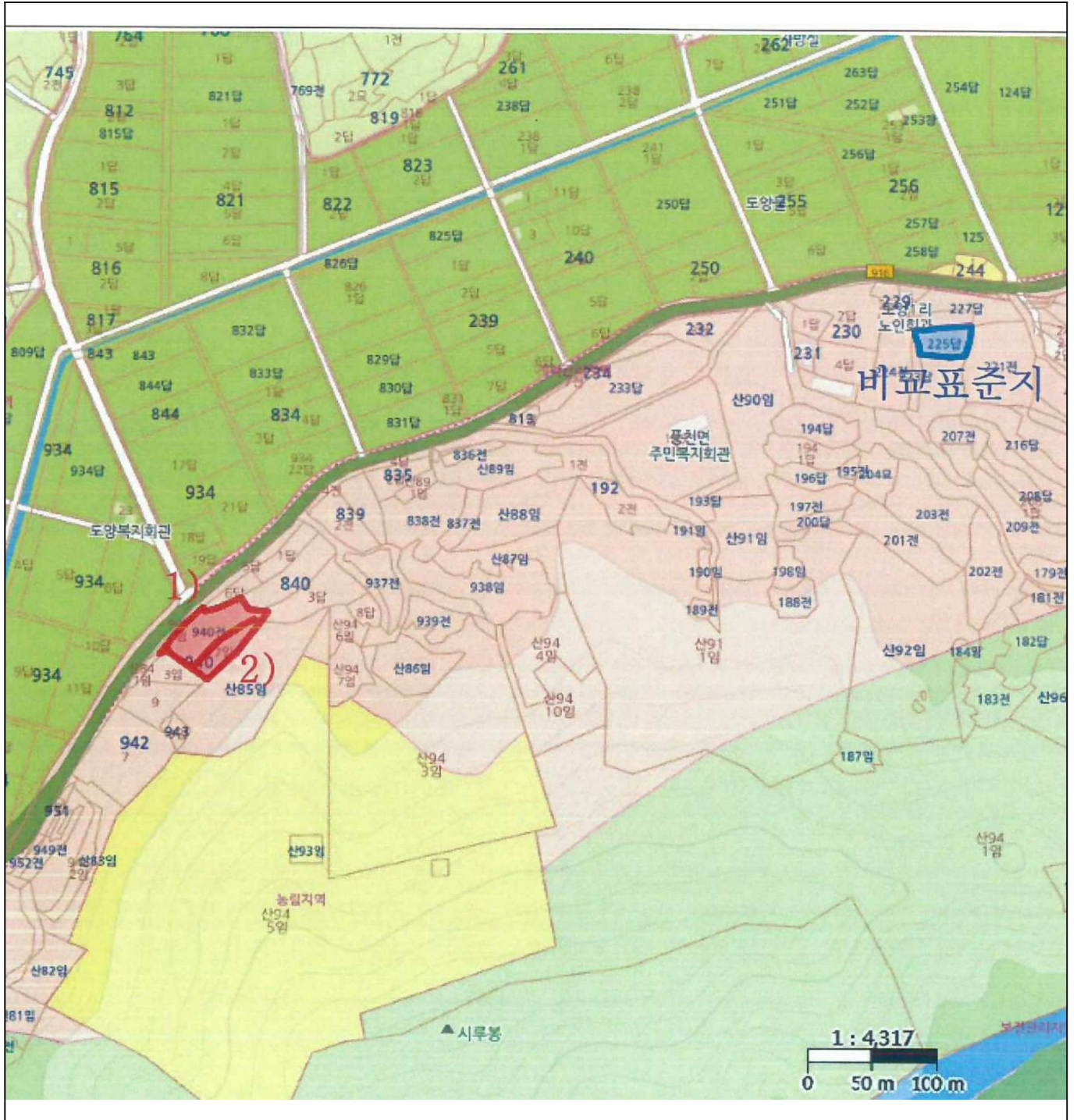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940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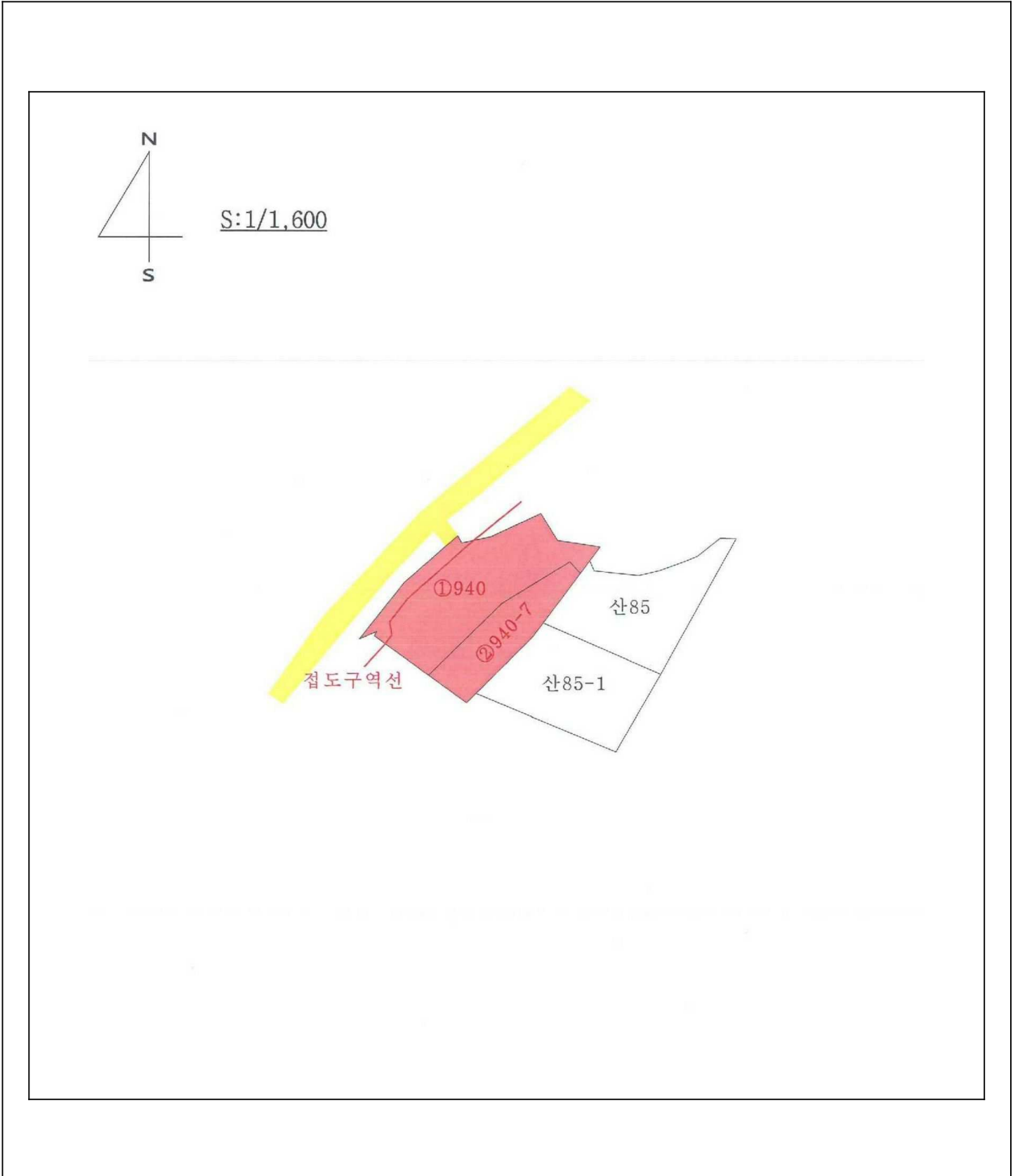
# 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940외



# 지 적 도



# 사 진 용 지



본건 북서측 전경



본건 서측 전경

# 사 진 용 지



기호 1)



기호 2)